

박형준 / 4월 / 기초GS Plus / 1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56214	18	11.5	0	0	29.5	1	0.66%	4	152
556312	17	11.5	0	0	28.5	2	1.32%	5	
556543	17	11.5	0	0	28.5	2	1.32%	5	
557114	17.5	11	0	0	28.5	2	1.32%	5	
557147	17.5	11	0	0	28.5	2	1.32%	4	
555790	17.5	10.5	0	0	28	6	3.95%	5	
556958	16.5	11.5	0	0	28	6	3.95%	4	
556203	16.5	11	0	0	27.5	8	5.26%	5	
556219	17	10.5	0	0	27.5	8	5.26%	4	
556282	16	11.5	0	0	27.5	8	5.26%	5	
556383	17	10.5	0	0	27.5	8	5.26%	4	
556703	17.5	10	0	0	27.5	8	5.26%	4	
556928	16.5	11	0	0	27.5	8	5.26%	4	
556972	16.5	11	0	0	27.5	8	5.26%	4	
556298	16	11	0	0	27	15	9.87%	5	
556321	16.5	10.5	0	0	27	15	9.87%	4	
556325	16	11	0	0	27	15	9.87%	3	
556232	17	10	0	0	27	15	9.87%	6	
556714	17	10	0	0	27	15	9.87%	5	
557035	16.5	10.5	0	0	27	15	9.87%	4	
554881	17.5	9	0	0	26.5	21	13.82%	5	
556337	17	9.5	0	0	26.5	21	13.82%	5	
556260	17	9.5	0	0	26.5	21	13.82%	5	
556594	17.5	9	0	0	26.5	21	13.82%	4	
557659	16.5	10	0	0	26.5	21	13.82%	5	
555801	15.5	10.5	0	0	26	26	17.11%	5	
556213	16.5	9.5	0	0	26	26	17.11%	4	
556423	17	9	0	0	26	26	17.11%	5	
556511	17	9	0	0	26	26	17.11%	4	
558879	16.5	9.5	0	0	26	26	17.11%	4	
556536	16	10	0	0	26	26	17.11%	3	
556609	17	9	0	0	26	26	17.11%	5	
557184	16	10	0	0	26	26	17.11%	4	
555866	18	7.5	0	0	25.5	34	22.37%	4	
556436	16.5	9	0	0	25.5	34	22.37%	4	
556482	16	9.5	0	0	25.5	34	22.37%	4	
556728	15.5	10	0	0	25.5	34	22.37%	4	
557746	15.5	10	0	0	25.5	34	22.37%	4	
551074	14.5	10.5	0	0	25	39	25.66%	5	
554589	15	10	0	0	25	39	25.66%	4	
555312	16	9	0	0	25	39	25.66%	4	
555314	15.5	9.5	0	0	25	39	25.66%	5	
556324	16.5	8.5	0	0	25	39	25.66%	5	
556333	15	10	0	0	25	39	25.66%	5	
556397	15	10	0	0	25	39	25.66%	4	
556412	15	10	0	0	25	39	25.66%	4	
556434	15.5	9.5	0	0	25	39	25.66%	4	
556471	14	11	0	0	25	39	25.66%	4	
556776	15.5	9.5	0	0	25	39	25.66%	3	
556205	16	8.5	0	0	24.5	50	32.89%	3	
556272	17	7.5	0	0	24.5	50	32.89%	5	
556320	16.5	8	0	0	24.5	50	32.89%	5	
556399	16.5	8	0	0	24.5	50	32.89%	6	
559826	12.5	12	0	0	24.5	50	32.89%	5	
556905	14.5	10	0	0	24.5	50	32.89%	6	
554633	17	7	0	0	24	56	36.84%	5	
556305	14	10	0	0	24	56	36.84%	5	
556386	15	9	0	0	24	56	36.84%	5	
556408	16	8	0	0	24	56	36.84%	5	
556734	14	10	0	0	24	56	36.84%	4	
556785	13.5	10.5	0	0	24	56	36.84%	5	
556976	15	9	0	0	24	56	36.84%	5	

561645	18	6	0	0	24	56	36.84%	5
556294	15	8.5	0	0	23.5	64	42.11%	4
556329	15	8.5	0	0	23.5	64	42.11%	5
556358	17	6.5	0	0	23.5	64	42.11%	4
556359	16.5	7	0	0	23.5	64	42.11%	5
557152	15.5	8	0	0	23.5	64	42.11%	4
559611	16.5	7	0	0	23.5	64	42.11%	3
556448	16.5	7	0	0	23.5	64	42.11%	3
556569	16.5	7	0	0	23.5	64	42.11%	5
556693	15	8.5	0	0	23.5	64	42.11%	4
556748	16.5	7	0	0	23.5	64	42.11%	5
556878	12.5	11	0	0	23.5	64	42.11%	4
556043	14.5	8.5	0	0	23	75	49.34%	4
556473	17	6	0	0	23	75	49.34%	4
559375	15.5	7.5	0	0	23	75	49.34%	5
556616	14	9	0	0	23	75	49.34%	4
556825	14.5	8.5	0	0	23	75	49.34%	5
556991	14	9	0	0	23	75	49.34%	6
554553	16	6.5	0	0	22.5	81	53.29%	5
554737	16	6	0	0	22	82	53.95%	5
556071	14.5	7.5	0	0	22	82	53.95%	5
556341	15	7	0	0	22	82	53.95%	4
556421	16	6	0	0	22	82	53.95%	5
558081	15.5	6.5	0	0	22	82	53.95%	4
554654	13.5	8.5	0	0	22	82	53.95%	5
557212	13.5	8.5	0	0	22	82	53.95%	4
557637	16	6	0	0	22	82	53.95%	4
554631	14	7.5	0	0	21.5	90	59.21%	4
555946	15	6.5	0	0	21.5	90	59.21%	5
556154	14.5	7	0	0	21.5	90	59.21%	3
556409	15.5	6	0	0	21.5	90	59.21%	5
556431	13.5	8	0	0	21.5	90	59.21%	3
556499	13.5	8	0	0	21.5	90	59.21%	4
556443	15.5	6	0	0	21.5	90	59.21%	5
556833	13	8.5	0	0	21.5	90	59.21%	4
557156	14	7.5	0	0	21.5	90	59.21%	5
559135	13.5	8	0	0	21.5	90	59.21%	4
555788	14	7	0	0	21	100	65.79%	4
556360	14	7	0	0	21	100	65.79%	5
556336	13.5	7.5	0	0	21	100	65.79%	6
556416	12.5	8.5	0	0	21	100	65.79%	5
556479	17	3.5	0	0	20.5	104	68.42%	6
556483	12.5	8	0	0	20.5	104	68.42%	5
556809	14.5	6	0	0	20.5	104	68.42%	5
559560	14.5	6	0	0	20.5	104	68.42%	6
557110	13.5	7	0	0	20.5	104	68.42%	4
556626	13	7.5	0	0	20.5	104	68.42%	5
556342	11.5	8.5	0	0	20	110	72.37%	5
556382	13	7	0	0	20	110	72.37%	3
556430	14	6	0	0	20	110	72.37%	5
556445	10.5	9.5	0	0	20	110	72.37%	5
557049	13.5	6.5	0	0	20	110	72.37%	5
556790	12.5	7.5	0	0	20	110	72.37%	4
556380	13	6.5	0	0	19.5	116	76.32%	5
556475	10.5	9	0	0	19.5	116	76.32%	4
556913	17	2.5	0	0	19.5	116	76.32%	4
551072	15.5	3	0	0	18.5	119	78.29%	5
555692	13	5.5	0	0	18.5	119	78.29%	4
556044	15	3.5	0	0	18.5	119	78.29%	4
556161	14.5	4	0	0	18.5	119	78.29%	5
556481	12	6.5	0	0	18.5	119	78.29%	4
556747	11.5	7	0	0	18.5	119	78.29%	5
558116	13	5.5	0	0	18.5	119	78.29%	5
556301	15.5	2.5	0	0	18	126	82.89%	5
556777	11.5	6.5	0	0	18	126	82.89%	5

558038	15.5	2.5	0	0	18	126	82.89%	5
556557	11.5	6.5	0	0	18	126	82.89%	3
556741	14	4	0	0	18	126	82.89%	4
557130	10.5	7.5	0	0	18	126	82.89%	4
556234	16	1.5	0	0	17.5	132	86.84%	5
556414	14	3.5	0	0	17.5	132	86.84%	4
557029	15	2.5	0	0	17.5	132	86.84%	4
556881	17.5	0	0	0	17.5	132	86.84%	4
556513	17.5	0	0	0	17.5	132	86.84%	4
557685	14	3	0	0	17	137	90.13%	4
556189	14.5	2	0	0	16.5	138	90.79%	5
556373	15	1.5	0	0	16.5	138	90.79%	4
556906	11.5	5	0	0	16.5	138	90.79%	5
556631	16.5	0	0	0	16.5	138	90.79%	5
556322	12.5	3.5	0	0	16	142	93.42%	5
556704	11	4.5	0	0	15.5	143	94.08%	4
556357	11.5	3.5	0	0	15	144	94.74%	3
555807	14	0	0	0	14	145	95.39%	4
556316	13.5	0.5	0	0	14	145	95.39%	4
556883	11	2.5	0	0	13.5	147	96.71%	6
556588	8	5	0	0	13	148	97.37%	5
557238	11.5	0	0	0	11.5	149	98.03%	4
556151	4.5	6.5	0	0	11	150	98.68%	3
556497	10.5	0	0	0	10.5	151	99.34%	5
556171	9.5	0	0	0	9.5	152	100.00%	4

<b>박형준/4월/기초GS+/15회/1번</b>	<b>채점자</b>
	<b>박수홍</b>
<p><b>1. 전반적인 총평</b></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초GS+ 출수회차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문제 1번은 의약용도발명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으나, 채점하면서 느낀 점 이하 작성해보겠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은 의료행위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 발명들은 처음에 의료행위 발명임을 명시하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거절이유의 타당성을 물은 만큼, 충실히 작성해주시고, 이에 대한 극복 방법(동물한정보정)도 간단히 작성해주신 경우 인상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청구항 2내지 4의 신규성 위반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신규성 판단 법리와 함께, 청구항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신규성 위반 여부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뭉뚱그려 그냥 한번에 판단해버린 답안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p> <p>청구항 3의 경우 약리기전이 추가로 작성되었고, 청구항 4의 경우 투여용법으로 한정하여 작성되었는데, 이에 맞춰 약리기전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없음을, 반대로 투여용법은 구성요소로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청구항 2가 신규성이 부정됨을 이유로 종속항인 청구항 3,4 역시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논리를 쓰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종속항이 신규성 위반인 경우 독립항 역시 위반이지만, 독립항이 신규성 위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속항도 신규성 위반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p>	

###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는 것에 따라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판례와, 보정을 통한 하자 치유 가부 판례를 충실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판례들의 현출도와 사안포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습니다.

### **(3) 설문 4**

설문 4의 경우 의약용도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례와 함께, 사안포섭 통통하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라벨론과 수정된 라벨론 판례 작성해주신 분들도 그에 맞춰 포섭해주시면 됩니다. 포섭할 때, 포장, 광고에 따라 소목차로 나누어 포섭해주신 경우 가독성이 더 좋았습니다.

## **3. 소결**

의약용도발명은 판례가 많고, 따라서, 출제가능성도 높은 논점입니다. 다양한 특이 발명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도가 높으니, 실수로 누락하거나 이탈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박형준/4월/기초GS+/15회/2번</b>	<b>채점자</b>
	<b>박수홍</b>

###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BM 발명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해당 발명이 BM 발명인지는 잘 찾아주셨습니다. 의약용도발명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발명인만큼, 해당 논점 역시 잘 정리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발명의 정의규정과 함께, BM발명 판례 작성해주신 후, 그에 맞춰 사안포섭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안포섭 시에, 제 1단계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판단은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흐름으로 포섭해주신 경우 더 인상이 좋았습니다.

####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BM 발명의 실시가 외국서버를 통해 국내에서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실시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문헌판검이 존재하므로, 해당 논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논점은 속지가 안될 경우, 기지를 발휘하여 작성하기가 힘든 부분인만큼, 어느 정도 키워드 위주로의 속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설문 3

설문 3의 경우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모두 검토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침해의 경우 구법상 업로드 행위가 실시가 아니었으나, 방법사용의 청약이 도입되어 고의의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사용의 청약 논점 놓치신 분들이 꽤 보였습니다.

### 3. 소결

어느덧 기쁨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GS와 비교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쁨을 수강하고 계시다면 동차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더더욱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앞으로 발전할 일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금만 참고 7월까지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GS 작성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실전GS들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제-13

17

2. 실문(1)

1. 청구항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부 - 소극.

(1) 법 29조 1항 산업상 이용 가능성

(법 29조 1항이 따르면 특허할 만한 산업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요한다.)

(2) 의료행위의 경우 - 예외

의료행위의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정한 다른 판시를 한 바 있다.

(3) 예외에 대한 비판 의견

'산업'은 최광의 의미로서 ~~의료~~ 의료행위를 산 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4) 전도

① 의료행위의 경우 소진 이론의 적용이 어렵고,

②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의료~~ 의료행위를 독점

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③ 비록과 같은 효력제

한 행위 역시 규정해 있지 않고, ④ 법 32조

이 따라 동서양술에 반한대로 할 수도 없으므로

⑤ '~~의료행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정한

예외의 태도가 일정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 소극

사안의 경우 청구항 1은 '등로 퍼버티'를 '경안하여'



특허 출원권기 공인 논문이 원칙이다. 이 결  
막영 치료 효과가 구체적으로 개시된바, 무  
청정 논문 내용의 치료 효과와 클립이 모  
등하여 신기술이 부정된다고 할수 있다.

### 3. 청정 3의 경우 - 신기술 부정

#### (1) 약리 기전이 추가된 경우 - 위시제

약리 기전은 그 발명에 이르기 위한 제기에 불  
 과하여, 약리 기전은 전 그 발명을 '특정'하는  
 하나의 주 경우 수 일 변이고, 그 발명을  
 '한정'하는 구 상 요 소 는 아 니 고 한 다.

#### (2) 사안의 경우 - 신기술 부정

사안의 경우 '정신 세트를 인정과 시키는'이라는  
 약리 기전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구 상 물 질 과  
치 료 효 과 는 동 일 한 바, 공 제 들 이 의 래 로  
청 정 이 부 정 된 다.

### 4. 청정 4의 경우 - 신기술 인정

#### (1) 특수 ~~특수~~ 방법이 추가된 경우 - 위시제

특수 방법의 경우 의 치 료 효 과 와 그 본 질 이 같 은  
제 의 효 과 나 부 정 용 장 소 의 효 과 가 대 체 일 수 있 고

(3) 비 용 과 사 안 이 변 이 되 자 도 의 신 기술 을 인 정 하 고

관해 ④ 외도행위 자체 가아타 외도행위 발명의  
구성이 된다 판시 후 바 있다.

4. 사안의 경우 신규성 인정

청구항 4는 구체적인 구체방법을 포괄 한 나 종류  
지 기술 과는 다른 구체 수 를 갖고 있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고  
신규성 이 부 조 되 지 않 는 다.

5. 결론 - 그 중 항 정당, 항 부 부 당.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신규성 이 부 조 되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는 다  
판 단 의 거 근 이 기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는 다. 그러나 청구항 4  
는 신규성 이 없 고 신규성 이 부 조 되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는 다  
판 단 의 거 근 이 기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는 다.

IV 실문리 4

1. 특허 발명 의 용 이 실 문 리 - 법 42조 3항 로

특 리 는 공 개 의 개 가 인 바, 특 리 출 원 상 의 실 문 리 사  
수 를 기 는 명 세 서 드 면 을 창 작 하 여 발 명 을 용 이  
판 단 에 실 시 할 수 없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는 다.

2. 실 문 리 가 기 재 의 없 는 것 으로 판 단 될 수 있 는 다

특 리 발 명 은 법 42조 3항 1호 에 의 거 로 용 이 실  
시 할 수 없 는 것 으로 발 명 의 실 문 리 가 기 재 의 없 는 것 으로

아니라, 출원인이 명백히 그 효과가 명백하게 알려지 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용예비등 을 시험 여가 개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에 관한 점의 즉 구체적인 개제가 없는 경우 발명의 결과 42조 3항 1호의 요건 충족 불충족, 등시에 발명이 존속의 영답도 불충족이 결과 조항의 요건 충족면으로 한다.

### 3. 보정 극복 거부 - 소극

실용예비 등 개제되어 있지 않아 그 발명 특성의 미완성 발명이 제정되는 경우, 특가 자원을 보 완하여, 제정되는 것은 보외 보위를 넘어 실한 보 이어서 불충족이 약하다고 한다.

### 4.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음주파타신너 결핵을 치료약과 가 명백하게 알려지 는 사안이 보 지 않고, 이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용예비가 개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발명 결핵은 결 42조 3항 1호와 결 29조 1항 불충족이 상시 불충족은 미완성 발명이 속하고, 이는 보정을 통해 개제를 자유할 수 없을 것이다.

IV 실용 (4)1. 특허 발명의 특허권 범위 구성요소의 판례 원칙

특허 발명의 특허권 범위 구성요소는 그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가 그 구성요소의 경계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 특허 발명의 특허권을 구성한다 한다.

2. 이종 발명의 특허권 범위의 판례 - 차이(1) 차이

이종 발명의 특허권 범위가 특허권 범위이기 위해서는 구분 발명과 비교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 유통하는 과정이나 ~~특정~~ 국경의 통과 비교의 제 불기서 그 용도가 실현되는 지 여부 등 중요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할 바 있다.

(2) 경도

포장, 광고 등은 중요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3. 2의 판례 원칙이 특허권 범위의 판례(1) 특정 제기

사안의 경우 특허권 범위의 구분 발명 구성요소의 판례는 부본은 특정 제기 되지 않고 특정 발명의 보조 발명이기 2의 판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포장

(1) 동종 동치는 '신앙병 리호제' 라고 적혀 있으나  
문제풀 것이 없다.

(2) 공고

2은 甲의 특허발명의 치유효과를 가진 칸타이, 결  
구명치료를 찾는 사람들이 응답파타인이므로  
결정 4을 적극으로 권유하여 = 판매하고 있는  
바, 2의 행위는 질타행위회구성모도 2의 공  
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정 - 질타 행위

2의 행위는 甲의 특허권을 질타하는 행위이다

(공)

(문제-2)

I. 실용(1)

4 11.5

1. 법적 근거 - '발명의 정의 규정'

(1) 법 2조 1항

특허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을 말한다.

(2) 법 2조 1항 본문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을 말한다.

2. 甲의 발명이 특허대상인 자- 적극.



### (1) 문제제기 - BU발명

#의 상황은 사업아이디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의 BU발명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형태의 발명이 공회유장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된다.

### (2) 발명 사업 요건 - 제1회

~~조발명 특허~~ 특허에서 발명인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① 소프트웨어의 정보체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점, 발명에서의 발명이란 할 수 없고, ② 이러한 발명의 사업요건은 "중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사안의 경우 - 충족.

#### 1) 제1단계 - 불충족

소프트웨어의 정보체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제2단계 내지 제4단계 - 충족

소프트웨어의 정보체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발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불충족의 요건을 발명의 사업요건을 충족한다.

#### 3) 결론 - 전체로서 충족

제1단계가 불충족이지만, 제2단계 내지 4단계를 고려하면 "전체로서 충족한다고 보인다."



## 제외 가압 요청서

3. 사안의 경과 - 총론

2의 실시 행위는 제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과실(3) 4-5

1. 구법 및 문제점

법. 23 항과 3항 미리는 '전통적인 관행의 발명의 보호에 대해 ~~제한적인~~ 행위인 발 크라인을 통한 실시 - 진흥 행위에 대해 특허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

2. 2020년 3월 11일 개정법

~~제~~ 개정 개정법을 통해 ① 법 23항 (내국 후안역)을 신설하여 '방법 사용의 중점을 포함하고 ② 법 94조 2항을 통해 고의적인 실시의 경우 방법발명의 사용권 약역시 특허권 행위를 구성하도록 개정하였다

3. 사안의 경우 직권행위 여부 - 목적 제한적

(1) 丙이 법 23항 (내국의 실시행위)

공의 집과까지 압도 행위는 특허발명의.



문제 -1

I. 섯문 (1)

3.5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조제 29조 제1항 본문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며, 이용가능성은 이득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

2. 관련 섯제 (1) 섯제

섯제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진단, 예방하는 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비판

섯제이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치료의 개념인 바,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3) 검토

의약품, 의료장치와 다르게 의료행위는 방법발명으로 신질적이지  
작용되지 않으며, 의료행위에 특정한 부여하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섯제에 특정한 인정~~ 타당하다.

3. 사안

특허 청구항 1은 결막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허 청구항  
1은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있는 발명으로서 특허권



받을 수 없다.

#### 4. 선택 다의 해명 - 거절유 타당성 (적극)

특히 청구항 1은 이러한 발명은 상용 이용가능성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사판의 거절유 통제는 타당하다.

## II. 실문 (2)

6.5

### 1. 청구항 2, 3 거절유 타당성 검토 - 적극

#### (1) 이익용도 발명.

새로운 약리효과 발견을 기한 새로운 이익용도를 제시하는 발명이다.

#### (2) 구성요소 - 수반질

이익용도 발명인 이익용도라 하는 이해  $\Rightarrow$  이에 대한 이익용도를  
구성요소 하는 발명이다.

#### (3) 약리기전.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 이익용도나 복합을  
증축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므로 약리기전은 특정 이익용도를 행상하는

범위 내에서도 구성요소의 이해를 가장본, 약리기전 그 자체가 청구  
범위 범위를 행상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 (4) 사안

신행용인 심리된 원래 올라파타틴의 결막염 치료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어 특히 청구항 2와 3의 결막염 치료용도 신규성이  
부정된다.

(5) 소결 .

①의 청구항 2와 3은 선행기술이 부정되므로 심판관의 기결이유 통지는 타당하다 .

2. 청구항 4 기결이유 타당성 검토 . - 1주

(1) 이익특여 방법의 구성요소 거부 - 적극 (수백제)

① 특허방법은 '이익특여'라기 보다는 같이, ② 특허방법은 약제의 항상이나 부작용의 강함과 같이 예상치 못한 효과 발현이 가능하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③ 특허방법은 이익특여 자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물건에 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

(2) 진보성 판단방법 . - 수백제

특허방법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미약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3) 사안 .

1) 이익특여 방법 구성요소 거부 - 적극

①의 청구항 4는 1회에 1방울 1일 2회 (6~8시간 간격) 정한하는 결막염 치료용 약학적 성분으로 이익특여 방법도 구성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이익 특여 방법은 무척 ①의 이익특여 방법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

2) 진보성 - 제한적 적극

① ①의 청구항 4에 기재되어 있는 이익특여 방법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3. 반정 인정 여부 - 수반제

시험예를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함에 있어 명약 찬찬 매체 또는 도면이 기재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라면, 그 반정인 범위를 벗어난 반정으로, 반정을 통한 매체 기재불비 해소가 인정될 수 없다.

4. 사안

특히 특허출원의 찬찬 매체 및 도면에 올라타던의 결악명 치료에 관한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개정요구 통지받은, 반정을 하게 되는 경우 찬찬 매체 및 도면 기재사항 범위를 벗어난 반정이므로 특정 반정을 통해 구체적 실험 데이터를 기록해 기재 불비 해소가 불가능하다.

5. 실문 (3)의 해설 - 반정인 하자 사유 (부가)

특정 반정인 찬찬 매체 및 도면 범위를 벗어난 반정인 하자 사유 불가능하다.

IV. 실문 (4)

~~1. 사용자행위에 대한 침해~~

1. 침해판단 방법

(1) 사용자행위 - 수반제

특정 출원인 특정 물건 사용자면 침해이다.



(2) 생산, 판매 행위 - 신규제.

특히 피라 생산, 판매 과정에서 내세운 용도, 피라 제품 성분이  
그 용도를 달성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검토

라벨, 양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시안.

특정 용도(타타핀)를 포함하는 결막염 치료용 약학적 성분들에 대해  
특허를 받았고, 같은 용도(타타핀)를 포함하는 상당량 치료제 Y를  
판매하면서 의약품도가 상당량 치료제로 표시되어 있음에 따라  
특정 용도 약용 결막염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Y를 판매하고  
있다. 같은 판매 과정에서 Y를 결막염 치료제라고 내세우고 있고,  
Y에 용도(타타핀)가 포함되어 있어 Y는 결막염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3. 본문 내의 해결 - 침해

Z의 상당량 치료제 Y의 판매행위는 특정량 침범에 해당한다

1/11



## II. 본문 (2)

3.5

1. 주사위의 원칙 및 예외

- ① 주사위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② BM 방법이 다른 나라를 통해 행해지거나 국내 제공하고 있는 것을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① 침해금지권 BM 방법이 무력화 방식을 위해 침해 행하는 것  
 ② 침해 부재권 주사위 원칙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

3. 실무제

특허법상 실무제는 다른 나라를 통해 행해지거나 국내 제공행위를 국내에서 실시한 인정할 바 있다.

4. 검토

- ① 주사위 원칙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 ② 다른 나라를 통해 행해지거나 국내 제공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아야 자국산업 보호 가능하다.

5. 본문(2)의 해결 - 침해 여부 (정답)

2이 다른 나라를 이용해 타의 방법에 의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침해를 인정 침해가 인정된다.

Ⅱ. 문 13 5

1. 직접침해 여부 - 2주

(1) 용제성

≠ 온라인 진동이 특허법상 기성품 전부 포함하는지, 실시 행위인지  
 용제된다.

(2) 취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실시 위한 일부 수단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행위는 실시가 아니다.

(3) 사안

≠ 이 어플리케이션은 웹페이지에 탑재된 행위를 특허법상 실시  
행위가 아니므로 직접침해 아니다.

2. 간접침해 여부 - 2주

(1) 용제성

컴퓨터 프로그램이 진용품인지, 온라인 진동이 진용품 실시인지 용제된다

(2) 취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물건이 아니다.

(3) 사안

≠ 이 탑재된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물건이 아니므로 간접침해  
부정된다.

### 3. 주요이유 - 침해성립

#### (1) 위법성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된 자원을 다운받아 복사하는 행위는 업로드한 자원의 행위로 보아 적정침해 성립 가능하다.

#### (2) 사안

특이 업로드한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사용자가 다운받아 실행한다면 적정침해 성립한다.

### 4. 침해행위 - 침해성립

#### (1) 위법성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조 행위는 발행 사용자의 침해행위로 권리 침해라면 침해성립한다

#### (2) 사안

특이 어플리케이션 업로드 행위가 권리라면 발행 사용자의 침해 행위로 권리 침해라면 침해성립한다

- 이하의백 -